

산업기술 확인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--------

신청인	기관명		기관유형 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중소기업 [] 연구기관 [] 대학 [] 전문기관	
	주 소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업종	주생산물
	실무책임자	성명	소속	직위
		전화번호	팩스	전자우편

신청기술	신청기술명			
	기술분야	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산업기술	국가핵심기술 연관성(연관기술)	
		해당 근거 또는 보유 근거	기술 키워드(3~4개 이상)	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6호의3서식) 2.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10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위 기술분야의 해당 산업기술란에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고 해당 근거 또는 보유 근거란에는 신청기술의 개발·생산·사용 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, 산업재산권 등록 또는 인증·인정 등 객관적 근거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